

서울프린지페스티벌2026

■운영내규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행사 명칭은 <서울프린지페스티벌2026>(이하 <축제>)라 하고 영문으로 "The 29th Seoul Fringe Festival"으로 한다.

제2조 (기간 및 장소)

본 축제는 2026년 8월 6일(목)부터 8월 23일(일), 총 18일간 서울시에서 개최한다.

제3조 (취지 및 목적)

- ① 본 축제는 연극, 무용, 음악, 다원예술, 거리예술, 시각, 전통예술, 영상, 문학, 퍼포먼스 등을 기초로 자유롭고 실험적인 예술 활동을 선보임으로써 독립예술 창작 활성화 및 창작 교류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② 본 축제는 예술가들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, 이를 통해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.
- ③ 본 축제는 참여 예술가 및 작품을 바탕으로 신진 예술가의 발굴과 양성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한다.

제4조 (주최 및 주관)

본 축제의 주최 및 주관은 서울프린지네트워크이다.

제5조 (운영원리)

본 축제는 참여 예술가, 축제 사무국, 외부 협력 주체와의 상호 협의와 역할 공유에 기초한 공동체 운영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.

제6조 (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방식)

- ① 자유참가프로그램 : 축제의 취지와 운영 원리에 동의하는 예술가의 자유참가작으로 구성한다.
- ② 기획프로그램 : 축제 사무국 자체 기획 및 외부 협력 주체, 예술가, 공간 운영자, 자원활동가(인디스트) 등과의 공동기획으로 구성한다.
- ③ 기타 축제의 필요에 의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.

제7조 (재정 및 회계)

- ① 본 축제의 재정은 비영리적 공공성에 입각하여 운영된다.
- ② 본 축제의 재정은 공동제작-공동운영의 원리에 따라 참여 예술가, 축제 사무국, 외부 협력 주체가 그 역할에 따라 분담한다.

제2장 예술가 참여

제8조 (축제참여)

- ① 본 축제의 취지 및 운영 원리에 동의하는 예술가는 공개적인 참가신청 안내를 통해 균등한 참가기회를 보장 받는다.
- ② 본 축제의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가는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축제 사무국과 협의하여 참여 방식을 정한다.
- ③ 예술가의 축제 참여는 참가신청서 제출과 인터뷰, 작품발표 일정 조정을 위한 참가팀 간 자유허의, 축제분담금 입금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.
- ④ 참가신청서 제출은 4월 30일(목) 11시부터 5월 14일(목) 15시까지이며,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한다.

제9조 (축제분담금)

- ① 축제분담금은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을 함께 만드는 주체인 예술가가 축제 제작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금액은 완전프린지, 프린지피케이션은 20만 원이며, 프린지스테이지는 10만 원이다.
- ② 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가는 5월 29일(금)부터 6월 10일(수)까지 축제분담금을 납부하여 축제 참여를 확정한다. 입금 계좌는 아래와 같다.

- 입금계좌 : 우리은행 1005-001-197924 / 예금주 : 서울프린지네트워크

③ 전염병의 창궐,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축제 사무국이 제공하는 작품발표 환경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, 사무국과 예술가는 축제 참여 방식을 논의 후 작품발표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한해 축제분담금은 환불될 수 있다.

제10조 (참여 예술가 의무 및 협조 사항)

① 예술가는 축제의 구성원으로서, 축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축제 제작 과정에 참여한다.

② 예술가는 내 작품이 곧 본 축제의 프로그램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작품을 제작한다.

③ 예술가는 내 작품과 관객의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이 사무국에 있음을 인지하고 사무국이 요청하는 작품 제작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.

④ 예술가는 작품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의 저작권 및 공연권에 대해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, 관련 논의를 사무국과 거쳐야 한다.

⑤ 예술가는 작품 창작 및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준비·운영한다.

제11조 (티켓 관리 및 수익 분배)

① 티켓 관리는 사무국이 일괄 운영한다.

② 완전프린지 티켓은 작품별로 운영되며 이에 따른 티켓수익금은 참여 예술가 : 사무국 = 6 : 4 로 분배한다.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무국은 이를 예술가에게 사전 공지해야 한다.

③ 프린지피케이션으로 참여하는 경우, 티켓수익금은 참여 예술가 : 사무국 = 8 : 2 로 분배한다.

④ 프린지스테이지로 참여하는 경우, 티켓수익금은 참여 예술가 : 사무국 = 6 : 4 로 분배한다.

⑤ 집객 및 티켓수익금 정산은 축제 종료 후 14일 이내에 사무국이 정산하여 해당 예술가와 공유한다.

제12조 (홍보 및 마케팅)

① 참여 예술가는 함께 축제를 만들어 가는 구성원으로서 사무국과 함께 작품 및 축제 홍보에 참여한다.

② 참여 예술가는 사무국과 별도로 개별 작품(축제)을 위한 후원 및 협찬을 추진할 수 있다. 단, 협찬 제공자의 홍보 마케팅 활동이 있을 경우, 반드시 사무국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
제13조 (기록재생물)

① 본 축제와 직접 관련된 영상, 사진, 음악, 문서 등 기록재생물의 저작권은 축제 사무국과 참여 예술가가 공유한다.

② 본 축제와 직접 관련된 영상, 사진, 음악, 문서 등 기록재생물의 사용권은 축제 사무국과 참여 예술가가 공유하되, 요청 시 협의 후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.

③ 본 축제와 직접 관련된 영상, 사진, 음악, 문서 등 기록재생물은 아르코예술기록원의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아카이브에 지속적으로 기록되며, 추후 사무국과 아르코예술기록원이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3장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

제14조 (구성)

① 본 축제의 프로그램은 크게 자유참가프로그램, 기획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한다.

② 자유참가프로그램은 예술가 자유참가 신청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구성원을 기본으로 한다.

③ 기획프로그램은 본 축제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사무국 자체 기획 혹은 협력 기획 주체를 통해 다양하게 구성한다.

④ 참여 예술가 및 관객들이 본 축제에 대해 풍성하고 수월하게 접근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.

제15조 (작품발표)

① 축제 사무국은 공간자료집을 통해 작품발표공간 별 참여 방식과 세부사항을 공지하며, 공간투어를 진행한다. 참가신청 마감 후 사무국은 예술가 인터뷰, 예술가 간 자유허의 과정을 통해 작품발표공간과 일정을 조율한다. 자유허의에 실패하는 경우 추천을 통해 작품발표공간과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.

② 불가피한 상황으로 작품발표 취소를 고려해야 할 경우, 예술가와 축제 사무국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안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 상호협의 하에 작품발표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4장 조직 구성 및 역할

제16조 (구성)

- ① 서울프린지네트워크는 축제의 기획 실행을 총괄하는 상설조직으로 운영되며, 원활한 축제 실행을 위해 “축제 사무국(이하 사무국)”을 확대 운영한다.
- ② 조직 구성은 단위업무와 프로그램 실행을 총괄하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관객, 자원활동가(인디스트), 외부 협력 주체,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.

제17조 (사무국)

- ① 사무국은 축제의 미션을 실현하고자 프로그램 구성 및 다양한 대외활동을 수행하며, 축제 운영 전반의 기획, 행정, 홍보, 운영 등을 총괄하는 실행 단위로서 역할을 한다.
- ② 사무국은 기능 및 역할별로 분화된 단위업무의 상근직 실무진으로 구성되며, 본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기 스태프 및 외부 협력 주체를 선임할 수 있다.

제18조 (업무 및 활동)

사무국은 본 축제의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축제 개최 일정 및 장소 결정
- ② 예술가 공개모집
- ③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
- ④ 협력 주체와의 프로그램 협력 기획
- ⑤ 자원활동가(인디스트) 모집 및 운영
- ⑥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일반
- ⑦ 티켓 운영, 집객 및 정산
- ⑧ 축제 전반에 대한 기술 및 행정적 지원
- ⑨ 공동기금 조성, 후원, 협찬 등 재정 및 회계 관리
- ⑩ 기타 축제 전반의 운영 관리
- ⑪ 본 축제 및 독립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
- ⑫ 본 축제의 탄소배출감축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한 실천
- ⑬ 본 축제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활동

제19조 (자원활동가)

- ① 본 축제의 원활한 실행과 폭넓은 참여를 위해 공개적인 모집을 통한 광범위한 자원활동 조직을 운영하며, 참여하는 자원활동가는 ‘인디스트’라는 고유명칭을 갖는다.
- ② 자원활동가는 축제 조직 내에서 각 단위별로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며, 축제 실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 및 실행, 지원한다.

제5장 재정 및 회계

제20조 (재정운영)

- ① 본 축제의 재정은 참여 예술가, 사무국, 협력 기획 단위가 공동 분담한다.
- ② 참여 예술가는 개별 공연 및 작품 제작비용을, 사무국은 축제 기획, 작품발표공간 대관(단, 프린지피케이션 예외), 운영, 홍보, 마케팅 비용을 부담한다.
- ③ 협력 기획 단위의 재정 부담범위는 프로그램 내용 및 결함 방식에 따라 협의한다.
- ④ 본 축제의 재정은 공공기금을 비롯하여 민간후원 및 기부, 기업협찬, 축제분담금, 티켓수익금 등을 통해 충당한다.